

의안번호	2213666
의 퇴 인	박성훈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2.
추계번호	25A5620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8조(자금지원)	○ 다만,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,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제3항 단서)	재량규정
2	안 제28조의2(전기요금 지원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에 소요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기간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8조(자금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8조의2(전기요금 지원)	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재편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을 포함하고, 동 기업을 포함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현행법은 법 제28조¹⁾에 따른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

1)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28조(자금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,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,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하는 기업은 제외하고 있으나(법 제28조제3항), 개정안은 동 기업을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임

- 또한, 동 기업을 포함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사업혁신에 소요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□ 다만, 현재 자금지원 대상이 아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향후 개정안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재편 기업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개정안은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를 “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,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”하여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로 규정하고 있음(안 제28조제3항 단서)
- 또한, 안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의 경우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에 소요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
- 참고로, 현행법에 따른 사업재편 관련 자금지원 추이를 보면, 2024년 기준으로 총 84건에 총 746억 300만원 규모임

[표 1]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

(단위: 건, 백만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.11.
자금지원 승인 건	4	17	35	84	51
자금지원 금액	890	8,721	20,648	74,603	32,702

주: 사업재편 승인기간 내의 자금지원 현황임
자료: 산업통상부

-
-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·이전·증설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- 승인기업의 새로운 제품·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-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규모,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